

관세법 시행령

[시행 2023. 1. 5.] [대통령령 제32931호, 2022. 10. 4., 타법개정]

개정이유

[일괄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·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「관세법 시행령」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, 「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「관세법 시행령」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⊙ 대통령령 제32931호(2022.10.4)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

제1조(「관세법 시행령」의 개정)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관세청장은 다음"으로, "관세청에"를 "필요한 경우에는"으로, "둔다"를 "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"한다"를 "하고, 제8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"로 한다.

제259조의7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"제7항"을 "제8항"으로 한다.

⑧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